

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성홍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24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: 2025년 10월 20일
발의자: 성홍제 의원(1명)
찬성자: 강석주, 김경, 김규남,
김성준, 김영철, 김원태,
민병주, 박칠성, 서상열,
송도호, 오금란, 왕정순,
유정희, 이민옥, 이영실,
이용균, 임규호, 최진혁,
허훈, 홍국표 의원(20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노후 승강기에서 문이 열리지 않거나 갑작스런 정지 등 고장이 잇따르고 있어, 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음.
-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노후 승강기에 대한 별도의 관리 근거가 없어 정밀안전검사 대상 승강기의 예방적 점검과 유지관리 지원에 한계가 있음.
- 이에 노후 승강기를 정의하고 시장이 정기점검과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승강기 이용환경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노후 승강기”의 정의를 신설하여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32조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대상 승강기를 명확히 규정함 (안 제2조제3호 신설).
- 나. 시장이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기점검 및 안전성 개선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, 안전관리와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시책 마련 근거를 신설함 (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).

다. 점검주기 및 지원기준 등 세부사항을 시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4조의2제3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첨부

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노후 승강기”란 법 제32조에 따른 설치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승강기를 말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노후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) ① 시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 승강기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안전성 개선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
② 시장은 제1항의 노후 승강기 안전관리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주기, 지원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. “노후 승강기”란 법 제32조에 따른 설치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승강기를 말한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4조의2(노후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) ① 시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 승강기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안전성 개선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시장은 제1항의 노후 승강기 안전관리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주기, 지원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조(정의)제3호를 신설하여 '노후 승강기'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, 제4조의2(노후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)제1항 및 제2항, 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기점검 및 안전성 개선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, 안전관리와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시책 마련 근거를 규정한 것임
- 신설조문 검토결과,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기점검 및 안전성 개선 조치 시행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시책의 경우, 서울특별시 주택실에서 예산을 기편성(건축기획과)¹⁾하여 시행하고 있어,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현

추계분석관 김진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2025년도 서울시 주택실 예산서

<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기점검 및 안전성 개선 조치 현황>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계획	추진 세부내용
승강기 실태점검	2025. 01. ~ 2025. 12.	104,000	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(50명),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